



제 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역업무 보조를 위한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98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검역업무 보조를 위한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안 제30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3. 31.

다. 회 부 일 : 2025.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3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검역업무 보조를 위한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안 제30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사를 채용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물검역사로 하여금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현행법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동·축산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족한 검역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수의직의 처우개선,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 중이나 검역관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 중인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영국, 호주, 미국 등과 국내 유사 입법례에서 보조인력 운용으로 검역관 부족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검역업무 중 수의학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기존 검역관이 담당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검역사가 담당하도록 검역관의 보조인력의 운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한정된 인적자원 내에서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바,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 검역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2) 대한수의사회

동물검역사 신설에 동의하며, 동물검역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과정에서 동물검역사에 대한 업무 규정, 자격요건 및 교육 규정을 마련하고 검역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동물검역관에 대한 직급상향,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 검토의견

현행법은 수출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축산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확대²⁾ 및 국제 교역량·해외 여행객의 지속적 증가³⁾에 따라 동물 검역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최일선에서 방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물검역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수입 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이 늘고 있고, 최근 새로운 해외 전염병이 국내 유입('23 렘피스킨)

* 주요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 ('15) 8,594건 → ('20) 17,869 → ('23) 15,334

3) * 검역 물량(탁송·우편 포함) : ('15) 497천건 → ('20) 785 → ('23) 1,033 → ('24) 1,113 ('15년 대비 중123.9%)

* 해외 여행객 추이 : ('15) 62백만명 → ('19) 91 → ('24) 89('15년 대비 중43%)

그런데, 최근 3년간 동물검역관의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24.12. 기준) 동물검역관 정원은 225명인데 결원은 47명으로, 정원 중 약 21% 정도가 결원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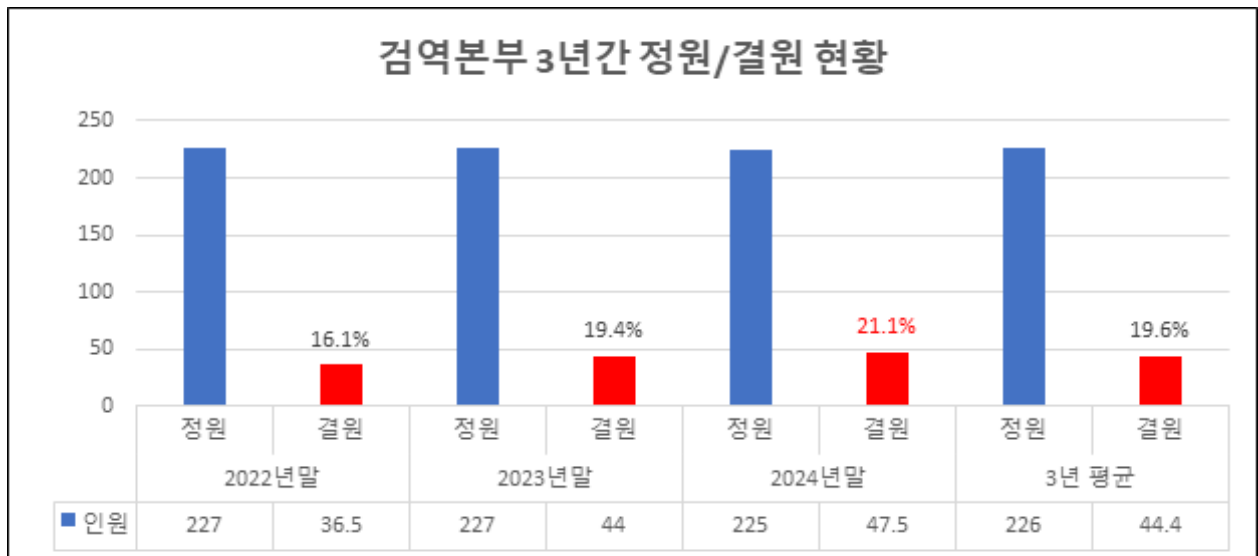
또한, 수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고 격무인 동물검역관 업무를 비선호함에 따라 신규 충원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최근 3년간 동물검역관 결원 현황 】

(단위: 명)

2022.12.31. 기준			2023.12.31. 기준			2024.12.31. 기준			3년 평균('22~'24년)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227.0	190.5	36.5 (16.1%)	227.0	183.0	44.0 (19.4%)	225.0	177.5	47.5 (21.1%)	226.0	181.6	44.4 (19.6%)

* '시간제선택근무자' 포함으로 소숫점 인력으로 표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제출(2025. 6. 9.)

【 동물검역관 결원 사유 】

- '24년말 동물검역관(6·7급) 정원 225명(본·지원) 중 결원 47명으로 약21%
 - * 최근 3년간 수의직(검역본부 전체, 7급) 채용율 : ('22) 14.2% → ('23) 14 → ('24) 34.6
 - * 최근 3년간 수의직(6·7급) 퇴직·휴직 인원 : ('22) 퇴직 24명, 휴직 19명 → ('23) 퇴직 13명, 휴직 27.5명 → ('24) 퇴직 27.5명, 휴직 28.5명
- 결원 주요 사유
 - **(채용)** 수의사의 경제적 요인(개원 선호, 임금 격차 등) 및 사회적 요인(워라벨 중시, 격무 기피) 의 사유로 수의직 응시율이 낮아 모집인원 대비 **채용 인원이 지속 부족**
 - **(퇴직)** 임상 분야 진출 또는 타 부처(지방직 포함)으로 전직 등으로 채용 등
 - **(휴직)** 육아휴직 및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 등이 주요 사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제출(2025. 6. 9.)

한편, 현행법 상 모든 검역업무를 동물검역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의학 관련 전문지식을 비교적 요하지 않는 휴대품 개봉 등의 단순 업무도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이 전부 수행함에 따라 결원으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동물검역관이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역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수출입 축산물에 대한 최종 판정 및 수출입 동물 검역 등 수의사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② 수출입 축산물 검역 관련 단순 확인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업무 등 수의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비교적 요하지 않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 동물검역관 업무 비교표 】

전문지식 필요 업무	기타 관리 업무
① 수출입 축산물 검역 • 수입 축산물[일반화물, 휴대·우편·특송(해외직구)] - 수입금지 최종 판정 - 상대국 검역증명서 최종 판정 - 컨테이너 또는 검역물 현물 검사 - 가축전염병 정밀검사 - 휴대품·우편물·특송물품 현물검사·최종 판정 • 수출 축산물 - 상대국 요건 검토 - 수출 도축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축산물 현물검사·최종 판정 ② 수출입 동물 검역 • 수입 - 가축전염병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상대국 검역증명서 검토 - 채혈 등 시료채취 - 백신접종 등 후속 조치 • 수출 - 가축전염병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상대국 요구사항 검토 - 채혈 등 시료채취 - 검역증명서 발급 ③ 검역 정책업무 분야 • (법령·고시 등) 검역 관련 법규 제·개정 • (위험평가·분석) 해외 가축전염병 정보 수집, 해외 국가 위험 평가 및 분석, 국제 기준 재개정 참여 • (해외작업장 관리) 해외 축산물 작업장 점검 및 승인, 동물 검역시설 승인 등	① 수출입 축산물 검역 • 수입 축산물[일반화물, 휴대·우편·특송(해외직구)] - 수입금지 물품 확인 업무 - 상대국 검역증명서 검토 업무 - 컨테이너 또는 검역물 현물 검사 업무 - 시료채취 및 불합격품 관리 업무 - 휴대품·우편물·특송물품 현물검사 업무 • 수출 축산물 - 수출 축산물 현물검사 업무 ②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행정업무 - 불법 동·축산물 반입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관련 행정 업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제출(2025. 6. 9.)

② 기타 관리업무의 경우 단순 확인 업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의사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 자격을 갖춘 동물검역사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주요 업무별 검역관/검역사 역할 구분(안) 】

업무	동물검역관(현 행)	동물검역사(신 설)
동물 검역	건강진단, 검안, 검역증 발급 등	-
축산물 등 검역	검사, 판정, 검역증 발급 등	공항만 휴대품·우편물 개봉검사, 서류확인 등
기타	위험 평가·분석 등 검역대책 마련 등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소독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제출(2025. 6. 9.)

한편, 검역 등 유사 업무의 보조 인력 운용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검사원,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야생동물검역사,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가축방역사가 있음.

【 유사 입법례 】

「축산물위생관리법」(식약처) : 검사원
제14조(검사원) ①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u>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u>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 야생동물검역사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③ <u>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
제8조(가축방역사)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u>

상기 유사 입법례의 인력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와 비교적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업무를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 유사 입법례 인력 운용 현황 】

구분	야생동물 검역 분야		가축방역 분야		축산물위생 분야	
	검역관	검역사	방역관	방역사	검사관	검사원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도입 시기	•2021.5.18.	•2021.5.18.	•1961.12.30.	•2000.1.12.	•1962.1.20.	•2001.12.31.
소속	•환경부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환경부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시.군.구, 가축방역기관등)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전국 17개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인력 (현원)	•8명	•10명	•90명 (검역본부) •1,850명 (시.도)	•496명	•204명	•395명
업무	•야생동물 검사 •검역증명서발급 •관계자 질문	•검사 보조 •시료채취 등 •소독 조치 •검역관 보조	•가축전염병의 역학조사 •검사 및 예찰 •조사·연구 등	•농가방문 질문 •예찰 시료채취 •방역관 보조	•가축 및 도축 검사 •안전관리인증 관련 업무(검증 등) •불합격축산물처리	•도축검사 보조 •안전관리인증 관련 업무 보조 •검사관 지시업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제출(2025. 6. 9.)

① 현행 동물 검역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기타 관리 업무의 경우 수의분야 전문지식이 필수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② 개정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물 검역 수요 증가에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가축전염병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사 입법례에서 보조인력을 채용·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물검역사 채용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동물검역사가 동물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 검역 프로세스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법에 따른 동물검역 대상은 ① 동물과 그 사체, ② 축산물 등 그 이외의 것으로 구분⁴⁾되는데, 동물의 경우 살아있는 개체로서 질병의 주요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질병에 감염된 동물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가축 등 다른 동물에 전염되어 대규모의 가축 살처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또한, 동물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 중에는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⁵⁾이 있는바, 이는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음.

반면에, 축산물 등의 경우 살아있는 동물과 달리 이미 도축 및 가공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병을 능동적으로 전파할 위험이 현저히 낮아 질병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임.⁶⁾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브루셀라병, 광견병, 결핵, 살모넬라증 등

6) 대부분의 동물 전염병 바이러스나 세균은 도축 과정이나 그 이후의 냉장·냉동 보관 등의 과정을 통해 사멸하거나 활동성이 크게 약화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검역사가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동법 제5조 및 제30조 등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동물검역사의 업무 범위를 “동물”에 대한 검역 보조까지 규정할 경우 검역 전문성 저하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위협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현행 우리나라와 같이 수의사인 검역관이 모든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① 미국의 경우 우편·휴대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② 영국·아일랜드의 경우 상업용 또는 개인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만 검역관의 검역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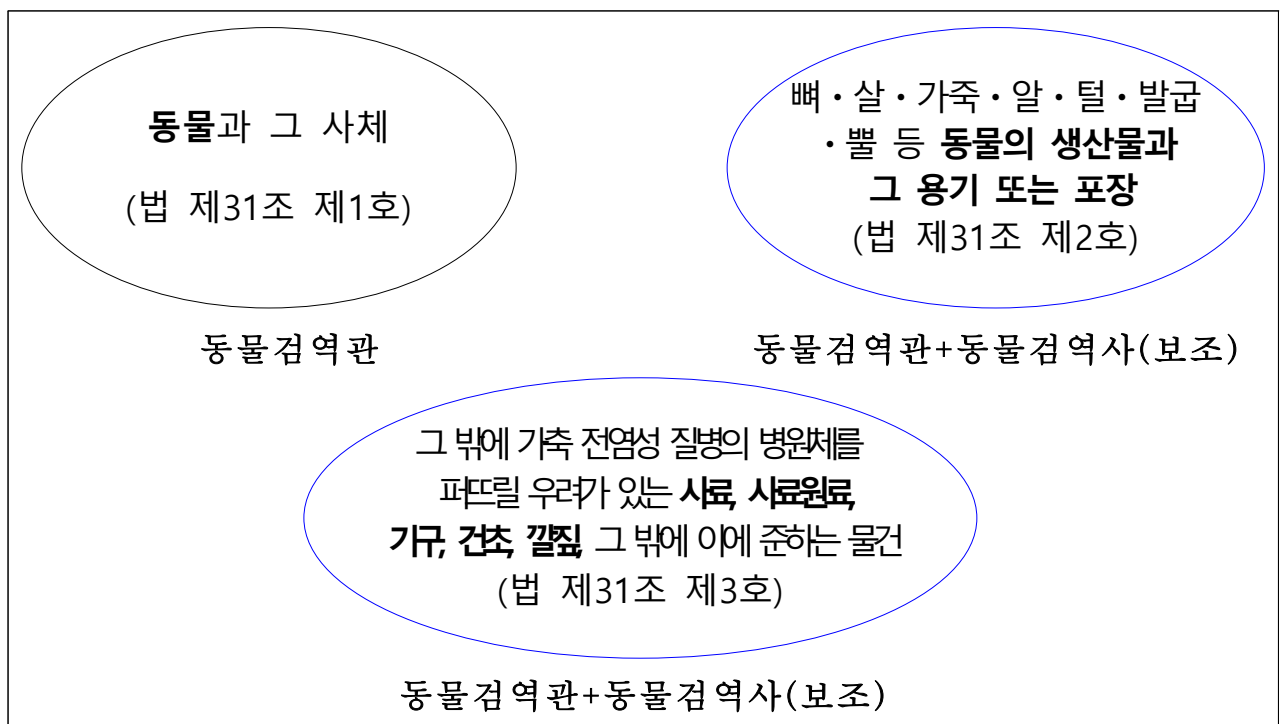
【 동물검역관 보조인력 해외사례 】					
구분	동물검역관		보조인력		비고
	소속	자격	소속	자격	
미국	농무부(USDA)	수의사	국토안보부(DHS)	농업분야 전공자	우편·휴대 등 수입축산물 담당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수의사	환경식품농촌부	관련 전공자	상업용 수입축산물 담당
			내무부	관련 전공자	개인 수입축산물 담당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DAFM)	수의사	농업식품해양부(DAFM)	요건 없음	상업용 수입축산물 담당
일본	농림수산업성(MAFF)	수의사 관련전공	-	-	동물검역 - 수의사 전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제출(2025. 6. 9.)

따라서, ① 동물 검역의 경우 축산물 등의 검역에 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이 크다는 점과, ② 미국 등 해외의 경우에도 보조인력이 일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만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을 보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물검역사가 “모든 동물 검역”에 대한 보조가 아닌, 현행법 제31조 제1호(동물과 그 사체) 이외의 지정검역물⁷⁾에 대하여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정의견 관련 도식화 】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축,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참 고 1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동물검역관 업무

-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입국자에 대한 신고서 수령. 필요시 신체 · 의류 · 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 · 검사 · 소독 등 조치
-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 필요시 의심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검사에 필요한 물건,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 필요시 소독
-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지정검역물의 반송, 소각 · 매몰 등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소각 · 매몰 등 조치
- 제36조(수입 검역)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함
- 제38조(화물 목록의 제출)제1항에 따른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관에게 지정검역물의 적재 여부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
-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함
- 제41조(수출 검역 등)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
-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법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 · 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 제45조(선박·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입국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상황을 확인.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
-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교육)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제출(2025. 6. 9.)

참 고 2

동·축산물 수출입 검역 업무 품목별 구분

□ 수입 검역

- (수입 동물)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반입되는 동물(가축, 반려동물, 조류 및 포유류 등)에 대해 임상검사,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 * 반입 동물(소, 돼지, 말, 닭 등)에 대하여 필수 검역기간 동안 임상관찰, 채혈 등 시료채취, 가축전염병 감염 유무 확인 정밀검사 및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등 실시
- (수입 축산물)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반입되는 축산물(식용, 비식용 등)에 대해 현물검사,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수행
 - * 화물·휴대·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축산물의 수입금지 여부 등 증명서 확인, 현물의 이상 유무 확인, 필요시 시료 채취와 가축전염병 병원체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 등 실시
- (수입 위험평가 및 분석) 상대국에서 동·축산물 수입허용 요구 시 해당 국가의 방역·검역시스템 평가, 질병 발생정보 수집·분석 등 수행
- (해외작업장 관리) 해외 국가에서 축산물 등을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 승인 요청 시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시설·위생 기준 준수 등 확인
- (축산관계자 등 소독·교육) 국내 축산농가 종사자 및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여행객에 대해 소독 및 교육 실시

□ 수출 검역

- (수출 동물) 상대국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검역증 발급
- (수출 축산물) 수출 상대국이 요구하는 해당 축산물 생산 지역·농장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 충족할 수 있도록 도축검사,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역증 발급
- (수출 도축검사)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출용 소·돼지고기 등을 생산하는 도축장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및 위생적 처리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실시

- (과태료·범칙금 부과) 불법 동·축산물을 반입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제출(2025. 6. 9.)

참 고 3

동·축산물 수출입 검역 업무 품목별 구분

구분	담당 기관	업무 주체	주요업무 및 역할	자격 요건		고용 방식	운영 방식	비교분석 (vs 한국)
				기본	추가			
한국	농림축산 검역본부	동물 검역관 (Animal quarantine officer)	- 동·축산물 검역 및 위생 관련 업무 전반	수의사	-	정부 소속	동물/식물 분야구분	-
미국	USDA 소속 APHIS	AQI VMO (Agricultural Quarantine & Inspection Veterinary Medical Officers)	- 동축산물 수출입검역 규정 수립·해외 정보 수집 및 동물 수출입 및 축산물 수출관련 업무 - 관할 구역 CBP에 동물 검역 규정 정보 및 전문컨설팅 등	수의사	-	정부 소속 + 민간 활용	동물/식물 분야구분	- 우편·휴대·화물 축산물 국경검역은 CBP의 농업전문가(비수의사) 가 전담 수행하며 동물의 경우 APHIS가 담당 *(수의사)검역 정책 수립 제공 및 현장 업무 자문 역할수행
	DHS 소속 CBP	농업 전문가 (Agriculture Specialist)	- 우편·휴대·화물로 수입되는 축산물 검역 및 통관 등 - 관할 구역 VMO에 우편·휴대·화물 검역 및 현장 정보 보고 등	비수의사 (농업관련분야 학사 또는 24학점 이상 이수 ⊕ 경력)	오리엔테이션 (2주) → FLETC 훈련 프로그램(59일)	정부 소속	비구분	
영국	DEFRA 소속 APHA 내무부 소속 BF(국경 수비대)	OV (Official Veterinarian) & OA (Official Auxiliaries) BFO (Border Force Officer)	- (OV/OA) 상업용 수입 동축산물 위탁화물의 검역 : OA는 OV의 감독 하에 관련 업무 보조 (최종서명은 OV만 할 수 있음) - (BFO) 공항만 CIQ·우편·특송 등 개인용 (비상업용) 수입축산물 조사	(OV) 수의사 (OA) 비수의사 (관련학과 졸업 및 교육 수료) (BFO) 비수의사	OA 모두 법정 업무 수행 위해 규정된 교육·훈련 등 수료	정부 소속 + 민간 활용	동물/식물 분야구분	- 공항만·우편 등 개인용 수화물 및 위탁 화물 등의 축산물 검역은 국경수비대 (BF)가 개인 수입 규정에 따라 처리 - 상업용의 경우, APHA에서 처리하며 민간수의사 활용
호주	DAFF의 생물안전 운영국	생물 안전관 (Biosecurity Officer) 정부 수의사 (동물·생물 안전국 소속)	- (생물안전관) 우편·휴대·화물로 수입되는 동물·축산물 검역 및 통관 등 - (정부수의사) 수입 동물 검역에 있어 동물 질병의 조사 및 검사 실시	(생물안전관) 비수의사 (별도의 자격요건 불필요) (정부수의사) 수의사	-	정부 소속	비구분	- 우편·휴대·화물 축산물 국경검역을 생물안전관 (비수의사) 이 전담수행 *(정부수의사) 동물 검역시 수의조사 실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제출(2025. 6. 9.)

문 의 처
02)6788-5426